

#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20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4. 11(월)

제 출 자 : 우강호의원외6인

## 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및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나. 심사기간은 2001. 4. 17. 1일간으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 : 없 음

# 심 사 제 획

## 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##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

-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
- 평창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·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-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

## 3. 활동기간

- 2001년 4월 17일 1일간으로 한다.

## 4.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

- 이경진의원, 강석주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김완규의원, 우강호의원, 김진석의원